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지주 및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정보 – 문서 체크리스트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은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노숙 또는 주거 불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임대료 체납 대상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지주 및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ERAP 포털의 소유자 계정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W-9 과세 납부 양식**.
- 서면 임대, 취소된 수표, 자금 이전 증거 또는 마지막 월세 전액 지급에 대한 기타 서류가 없는 경우 임차인 신청자와 **임대 이행 계약서**. 주택 주소, 임대 중인 부지, 월 임대 의무 및 서명 페이지를 포함하도록 임대 페이지 업로드.
- 월세 확인서 또는 월별 임대료가 기재된 대장을 업로드하여 세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한 문서**. 연체료나 주차료와 같은 비임대료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ERAP 포털의 소유자 계정에 직접 예금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은행 정보**.
- 해당하는 경우, **ERAP** 기금의 인가된 수령인으로 재산 관리 회사/대리인을 지정하는 소유인의 확인서 또는 서명 계약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인가된 부동산 관리 회사는 임대료 체납액을 포함하여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지급금과 중복되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신청 양식과 관련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인가된 부동산 관리 회사는 임대료 체납액을 수락한다는 조건으로 다음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 **ERAP** 지급은 지급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전체 임대 의무를 총당해야 합니다.
- **ERAP** 지불이 적용되는 모든 임대 연체료로 인한 연체료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 임대료를 지원을 받은 달과 **ERAP**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ERAP** 지원을 신청할 당시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 이상으로 월 임대료를 금액을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 **ERAP** 지급금을 수령한 후 1년 동안 임대차 만료 또는 임차 기간 연장을 이유로 **ERAP** 지급이 이루어진 가구를 대신해서 퇴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부지가 4개 이하의 부지를 포함하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 가족이 1차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즉시 그 부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합니다.